



제438회국회(임시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재판정 신체검사를 유족이 대리 신청 〉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799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재판정 신체검사를 유족이 대리 신청	2

I. 제안경위

1.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6. 2. 12.
3. 회부일 : 2026. 2.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의 상이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사망으로 인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악화 사실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는 국가의 희생 보상 책임이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유족의 예우와 지원 역시 실질적으로 제약되는 문제로 이어짐.

이에 상이처가 악화되었으나 사망으로 인해 본인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권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1회 한정 규정을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의3제9항).

Ⅲ. 검토의견: 재판정 신체검사를 유족이 대리 신청

- 개정안은 상이처가 악화되었으나 사망으로 인해 본인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유족이 1회에 한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9항).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3(신체검사) ① ~ ⑧ (생략)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 실시일,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3(신체검사)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국가유공자의 상이처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으로 인하여 본인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신청한 재판정신체검사를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유족의 신청은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 실시일,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판정신체검사는 이미 상이등급(1~7급)을 판정받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상이처의 악화·재발 또는

추가 상이처 인정 등으로 인해 등급을 재조정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검사로,

현행법은 본인의 신청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신체검사후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변경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횡수 제한 없이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특정 감염병 및 기생충성 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등 상이의 특성상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¹⁾로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하되, 상이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재판정신체검사) ⑤ 법 제6조의3제4항제1호에 따라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기는 별표 3의2와 같다.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서면심사(書面審査)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규신체검사: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3. 재확인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4. 재판정(再判定)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 ③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1.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재심신체검사나 재판정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상이(질병을 포함한다)의 특성상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 이와 같이 현행법 상 재판정신체검사의 신청권한은 본인에게 있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상이의 특성상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실시사유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의 상이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나 본인 사망으로 인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악화 사실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 이는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책임이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유족의 예우와 지원 역시 실질적으로 제약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상이처가 악화되었으나 사망으로 인해 본인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유족이 1회에 한하여 대신 신청

경우

2. 그 밖에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하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1. 9. 15.>

⑥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실시를 통보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야 한다.

⑦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재판정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에 의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상이등급이 하락(下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본인의 신청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⑧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는 국가보훈 장애인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의 신체검사(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는 제외한다)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 실시일,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실질화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은 부칙에서 별도의 적용례를 두지 않고 있음에 따라 시행일 이전 사망한 국가유공자도 포함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음. 개정안을 입법할 경우, 형평성을 제고하고 유족 보상금 지급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하여 시행일 이전 사망한 국가유공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에 따라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이 상향되는 경우, 유족 보상금 지급의 효력 발생시기를 유족의 신청 시점, 유공자의 사망 시점, 유공자의 상이처가 악화된 시점 중 어느 시점으로 할지가 불분명하여 보상금 소급 시점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변경된 상이등급에 따른 유족 보상금 지급의 효력 발생시기에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예우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동의하는 입장이나, 시행일 이전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경우를 포함하고, 유족 보상금 지급의 효력은 유족의 신청시점으로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임.

기획예산처는 동 사안과 관련하여 헌법소원³⁾이 진행중인 점과 「공무원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재심사기준과의 형평성(본인에 한해 인정)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10

3) (2025헌마419)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의해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권한이 유족에게 부여되지 않아 급격한 병세 악화가 있었으나 생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등급상향 기회가 없어 유족보상금 산정에 불리하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이 청구된 바 있음('25.4.11.)

